

우리 傳統 禮文化의 考察

崔根德 (成大 教授)

1

于先 禮에 對한 概念부터 解明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오랜 儒教 經書인 禮記나 春秋·論語등의 記述을 종합해 보면 禮라는 말은 실로 多樣한 뜻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廣義로는 “禮者 天地之序也”(禮記·樂記) 곧 禮란 하늘과 땅의 秩序라는 定義다. 이런 類의 言及은 到處에 있어 결국 「禮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事理를 一貫하는 法則」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서 한 수 좁혀 「人間의 欲望을 規制하는 社會秩序」(荀子·禮論) 「自然의 秩序에 따르는 人間 行動의 準則」(朱熹·四書注)이라 규정한 學者도 있다. 그런가 하면 歷史性·政治性을 강하게 띤 經傳, 例를 들면 春秋左傳같은 책에서는 “禮 所以整民也”(左傳·莊公23年) “禮 國之幹也”(左傳·僖公11年) “禮 政之輿也”(左傳·襄公21年)등의 해석으로 「禮는 國家의 法制」라고 설명하고 있다. 狹義로는 禮를 儀式으로 把握해서 五禮(吉禮·凶禮·軍禮·賓禮·嘉禮) 또는 四禮(冠禮·婚禮·喪禮·祭禮)를 일컫기도 했다. 다만 이때도 格調와 節次를 갖춘 儀典이어야 했으며, 均衡과 調和와 法度를 대단히 중요시했다. 가장 좁은 뜻으로는 禮儀凡節(生活禮節)일 수도 있었다.

이런 다양한 定義에도 불구하고 西歐式 概念設定에 焦點을 맞춘다면 禮를 文化(culture 또는 civilization)全般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우리 歷史上 禮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측 史書인 『漢書』(卷28 地理志下2)의 內容이다.

“殷의 道가 袞하자 箕子는 朝鮮으로 가서 그 백성은 禮義와 밭갈기·누에치기·베짜기로써 가르쳤다.”(『漢書』卷28 地理志下2,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 田蠶織作”)

이 구절은 이른바 箕子東來說의 근거인데 史家들의 考證에 의해 不定되고 있다. 朝鮮의 賢主人 箕子에게 殷末의 賢者인 箕子를 强附會하고 있는 것이다.

요는 이 時代에 이미 禮義를 알고, 農耕에 從事하고, 法律(犯禁八條에 대한 言及도 있다)도 設定되어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중국쪽의 기록으로 『後漢書』에서는

“東方을 夷라고 하는데 夷란 뿌리이다.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마치 만물이 땅에 뿌리박아 나오는 것과 같다느 뜻이다. 그래서 天性이 柔順해 道로써 다스리기가 쉽고 君子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에 이르렀다.”(『後漢書』卷58列傳 第75 東夷, “東方曰夷 夷者柢也 言仁而好生 萬物柢地於出 故天性柔順 易以道御 至有君子不死之國焉”)

고 했는가 하면, 『三國志』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음식에는 모두 祖豆를 쓰고 會同·拜爵·洗爵·揖讓升降을 한다.”(『三國志』卷30 魏書 烏丸 鮮卑東夷傳, “飲食皆用俎豆 會同拜爵洗爵揖讓升降”)

俎豆는 禮器(祭器)이고, 會同은 朝聘禮(外交儀禮), 拜爵은 飲酒禮, 洗爵은 鄉射禮, 揖讓升降은 두루 適用되는 生活禮節이다.

이로 보면 우리의 古代社會에서도 상당히 세련된 禮가 文化發展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禮記』가 어느 때 中土에서 傳해 왔는지 기록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高句麗 小獸林王 2年(西紀 372年)에 “大學을 세워 子弟를 教育했다”(『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二年 夏六月, “立太學 教育子弟”)는記事가 있어 이 때의 教材가 儒

教의 五經이었을 것이라 짐작되고, 또한 “書籍으로는 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등이 있었다”(『周書』卷49 列傳41 異域上 高麗, “書籍 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는 기록도 있어 高句麗에서는 이미 『禮記』를 배우고 가르쳤으며 上層社會에서는 그一部가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 證據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父母의 喪은 三年喪을 입었고, 兄弟는 달을 넘겨야 벗었다.”(『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服父母喪三年 兄弟踰月除”)

“死者는 屋內에 殯하고 三年을 지나서 吉日을 擇해 장사지냈고, 父母 및 지아비의 喪은 모두 三年喪을 지냈으며, 兄弟는 三月服을 입었다. 初終에는 哭泣을 하고, 장사지낼 때는 북치고 춤추며 음악을 연주해 보냈다. 매장이 끝나 死者 生時의 의복과 애완하던 물건, 車馬를 모두 무덤 옆에 갖다 두면 會葬者가 다투어 가져 갔다.”(『隋書』卷81 列傳46 東夷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 埋訖悉取死者生時服翫車馬置於墓側 會葬者爭取而去”)

『禮記』를 따르기도 했지만 死者를 보내는 儀式은 역시 土俗을 지켰던 것 같다. 新羅에서는 高句麗보다 늦어 神文王 2年(西紀 682年)에 이르러 비로소 國學이 完備되고, 元聖王 4年(西紀 688年)에는 官吏登庸試驗으로 讀書三品科를 설치했는데 『禮記』가 시험 과목의 하나로 指定이 된다.(『三國史記』新羅本紀 元聖王 4年, 또는 『東史綱目』第五上 元聖王)

이런 영향 때문인지 壬申誓記石¹⁾에는 “『詩經』·『書經』·『禮記』를 3년 안에 習得할 것을 맹서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統一新羅로 들어와서는 五經의 習得 研究가 學界의 중심 과제가 되고, 따라서 儒教의 禮도 널리 보급이 되었다. 그러나 禮學 專攻의 特出한 學者라든가 解說書·研

1) 1934년 경주 北村인 見谷面 金文里에서 발굴된 돌로(길이 약 34cm 폭 약 12.5cm) 新羅 青少年 2人の 誓辭가 새겨져 있다.

究書의 出刊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高麗時代에 이르면 儒教는 統治理念으로서 한층 完熟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宗教의 領域에서는 新羅 때와 다름없이 佛教가 興盛을 極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宮中 閨巷 할 것 없이 佛教儀式이 익숙하게 慣行되고 있었다. 儀式으로 본다면 酔祭를 비롯한 道教 儀禮도 上下에서 遷行되고 있었다.

『高麗史』에는 禮志가 11卷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데 編者는 序頭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저 人間은 天地陰陽의 氣를 包容해서 喜怒哀樂의 情이 있게 된다. 이에 선인이 禮를 制定해서 紀綱을 세워 그 교만하고 음탕함을 調節하고 그 사납고 어지러움을 防止해 백성으로 하여금 善으로 옮겨 罪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風俗을 이루게 하였다. 高麗 太祖가 나라를 세워 經營을 始作함에 規模가 宏遠했지만 草創이기 때문에 禮를 議定할 사이가 없더니 成宗에 이르러 先業을 넓혀서 圓丘에 제사 지내고 稷田을 갈며 宗廟와 社稷을 세웠고, 睿宗이 卽位해 禮義를 제정했다. 그러나 載籍은 傳하는 것이 없더니 毅宗 때에 이르러 平章事 崔允儀가 『詳定古今禮』 50卷을 撰進했지만 闕遺함이 많았고, 그 밖의 文籍도 두 번씩이나 兵火를 겪어 열에 한 둘이 남아 있을 뿐이다.”(『高麗史』志 卷13 禮一, “夫人函天地陰陽之氣 有喜怒哀樂之情 於是聖人制禮 以立人紀 節其驕淫 防其暴亂 所以使民遷善遠罪 而成美俗也 高麗太祖 立國經始 規模宏遠 然因草創 未遑議禮 至于成宗 恢弘先業 祀圓丘耕籍田 建宗廟社稷 睿宗始立 局定禮義 然載籍無傳 至毅宗時 平章事崔允儀 撰詳定古今禮五十卷 然闕遺尚多 自餘文籍 再經兵火 十存一二”)

崔允儀는 博識한 學者로 그의 著書 『詳定古今禮文』은 高宗 때 金屬活字로 刊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傳하지는 않는다.(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 의하면 崔允儀의 『古今詳定禮文』이 高宗 21年(西紀 1234年)에 활자로 찍어냈다는 것이며, 이는 世界最初의 金屬活字이다)

하여튼 高麗는 제6대 왕인 成宗(西紀 981-997年)에 이르러 儒教的 政治理念이 확

립되었으며, 禮制도 體統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로 詞華崇尚에서 講經 위주로 學風이 변화되어 가기도 했다. 科學科目에 對策 대신 「禮記」가 들어가고 (顯宗 10年), 好學하는 王이 主宰하는 經筵에 「禮記」가 「書經」 다음으로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經典 중심의 學風은 毅宗末年(西紀 1170年)에 일어난 武臣의 亂에 의해 一掃되었고, 이후 근 백년간 계속된 武臣政權으로 萎縮을 면치 못했다.

新儒學으로 일컬어지는 程朱學의 受容(西紀 1300年代)을 기다려 비로소 禮學이 일어나게 된다. 安珦 · 白頤正 · 禹倬 · 權溥 · 李齊賢 · 李穡 · 鄭夢周 등 學者들이 前後로 서로 이어 程朱의 註釋에 따라 經書를 穿鑿해 새로운 學風을 振作시켰고 權近에 이르러 드디어 禮學에 대한 大著作이 이루어지게 된다.

權近은 四書 · 五經에 口訣을 붙였고 「入學圖說」 · 「東國史略」 · 「五經淺見錄」 등 많은 著作을 남겼는데, 「五經淺見錄」 중 「禮記淺見錄」은 특별히 心血을 기울인 著述이다. 스승인 李穡의 命을 받고 붓을 들기 시작해 14年만에 完結을 보았으며 11冊 26卷의 龍大한 분량이다.

흔히 「朱子家禮」라 일컫는 南宋代의 家禮書가 언제 누구에 의해 輸入되었는지는 알길이 없다. 다만 「高麗史」에 恭讓王 2年(1390年)의 기록으로 “祭禮 儀式은 한결같이 「朱文公家禮」에 의하되 마땅함에 따라 덜거나 더한다”(「高麗史」卷63志 卷17 禮5 大夫士庶人祭禮, “行禮儀式 一依朱文公家禮 隨宜損益”)는 내용이 있어 이 때 이미 「朱子家禮」가 상당히 널리 보급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政府에서 大夫 · 士庶人의 家禮로 標準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땅함에 따라 덜거나 더한다”(隨宜損益)는 附言이 注目할 만한데, 이는 主로 祭需 · 祭品을 지칭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하여튼 「朱子家禮」의 전래는 대략 高麗末葉의 新儒學 즉 性理學의 受容과 거의 때를 같이 하는 것 같고, 이후 朝鮮朝에 들어와 일반 家庭의 禮制에 있어서는 이를 標準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朱子家禮」는 중국 南宋의 儒者인 朱熹(1130-1200)의 編著로 전해지는 책이다. 編著者에 대해 異說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대체로 首肯이 되어 내려왔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疑心을 하지 않았다. 통상 「朱子家禮」로 일컫지만 「朱文公家

禮」 또는 「文公家禮」라 冊名이 붙어 있으며, 版本에 따라 異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明나라 丘濬이 註釋을 붙인 文公家禮本이 流行했고 『性理大全』에 4卷으로 收錄되어 있는 것이 표준이 되었다.

家禮 곧 한 家門(家庭)의 禮法에 局限해 본다면, 『朱子家禮』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祠堂을 家庭 禮法의 중심으로 삼았다.

大宗・小宗의 家庭에 祠堂을 모시는 것을 통례로 삼았는데 사당에는 高祖以下 四代의 神位를 奉安하게 된다. 이는 祖上崇拜의 表徵인 동시에 같은 宗族間의 和合을 도모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초하루(朔)・보름(望)에 焚香을 하고, 忌日에는 祭祀를 드린다. 出入할 때 반드시 告해야 하고, 집안에 重大事が 있으면 告由를 한다. 색다른 음식이나 季節의 新味는 먼저 올리고서 산 사람이 먹어야 하고, 불이 나거나 물이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神主를 救해내야 한다. 祖上이 그 子孫과 함께 生活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다.

②深衣를 禮服으로 중요시했다. 裁斷하는 法을 圖面으로 곁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士大夫家에서 深衣를 정식 예복으로 입게 되는 연유를 만들었다.

③冠禮를 家庭의 4大儀禮 중의 하나로 규정해서, 이른바 通過儀禮로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冠을 중요시하는 風俗을 이룩했다. 男子는 冠禮・女子는 笢禮라 하는데 成年式에 해당하며 婚姻前에 반드시 施行하는 것을 準則으로 삼았다. 일명 元服이라 해서 王家에서 主導했고, 조선조 중기 이후에는 庶民의 가정에서도 시행했으며,女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혼인 전날 반드시 치루어야 했다.

④喪禮를 대단히 무겁게 취급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결국 繁文縟禮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⑤婚・喪・祭禮 등에 중국의 土俗・道敎・佛教的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이 부분의 詳論은 다음 稿로 미룬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朱子家禮』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일반 庶民의 家庭에까지 확대 適用이 된다. 國家에서 끈질기게 장려하고 때로는 強制했기 때문이다. “禮는庶人으로 내려가지 않는다”(禮不下庶人)는 『禮記』 「曲禮上」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고, 조선시대는 『朱子家禮』의 시행을 서민 가정에도 強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士大夫家에서 서민 가정에 이르기까지 『朱子家禮』가 완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집집마다의 禮”(家家禮)라는 말이 있듯이 家庭마다의 禮俗이 劃一的으로 規格化되기가 어려웠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주체적인 禮俗이 오랜 시일을 두고도 변화되기 어려웠다. 上古時代부터 風習으로 익혀온 土俗이 있어 중국의 法度와 相衝되는 地點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에 있어서(특히 조선시대) 우리의 家庭儀禮가 『朱子家禮』에 근거하고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맹목적으로 墨守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3

高麗의 “나라만들기事業의 完成期” 곧 文物制度 確立期라 할 수 있는 成宗朝에 나온 崔承老(927~989)의 時務二十八條는 儒教의 政治理念의 提示인 동시에 確定이기도 했고, 穀後 高麗一代의 基本路線으로 尊重되었다. 이 時務策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중국의 제도는 쫓지 않을 수 없지만, 세계 곳곳(四方)의 習俗은 각기 그 지방 特性에 따르므로 다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모든 것을 굳이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不必苟同)”

先進 文化는 받아들이되 우리의 특성은 살려야 하며, 구차스럽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 주장은 그대로 중국문화 受容의 準則이 되어 朝鮮朝에 이르도록 影響을 주고 있다. 朝鮮時代 禮學을 開花시킨 退溪 李滉은 ①禮文에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時王의 制度는 존중해야 한다. ②朱子家禮를 기본으로 삼기는 하지만 傳統의 因習도 합당한 것은 존중해야 하고 항상 참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拙稿 「退溪의 禮思想과 禮學史의 位置」 참조) 대표적인 禮學者인 沙溪 金長生 · 慎獨齋 金集 父子도 같은 意見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緣由에서 우리는 독특한 禮文化를 일궈왔고 전개해 왔다. 家庭 禮俗에 局限 시켜 보더라도 ①家庭을 夫婦單位로 생각해 婚禮를 아주 중요시했지만, 朱子家禮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家禮에 規定해 놓은 親迎을 따르지 않고 “男歸女家” 곧 妻家살이 婚俗이 그대로 지켜졌다. 朝鮮朝에 들어와 朱子家禮를 金科玉條로 반드시 社會風潮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親迎禮는 준수되지 않았다. ②男性이 代를 이어가는 主體이고 社會活動을 獨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女性의 地位가 格下되어 있었지만 ③女性이 婚姻에 의해 姓을 포기하지 않았다. ④남편이 官界에 진출해 出世를 하면 아내도 그에 相應한 權威를 누리게 했다. 조선시대 官爵의 品階는 18等級이 있었는데 文武官의 아내만이 임명되는 부인의 官爵은 10等級이었다. ⑤家庭의 經濟權이 대개의 경우 女性(아내)에게 있었다. 우리의 전통사회는 農耕에 의존하는 農業經濟體制였기 때문에 穀物·綿布가 通貨를 대신하고 있었고, 이의 관리는 아내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⑥母權이 確立되어 있었다. 子女에 대해 夫婦는 동등한 監督權을 지니고 있었고, 教育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家庭안에서 女性은 아내로서의 권리보다는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더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우리의 傳統社會 禮文化는 儒教에서 發源하고 中國的 先進文化에 의해 洗練化되기도 했지만, 우리 固有의 土俗·禮俗이 은근하게 또는 끈기있게 그 底力を發揮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